

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

1. 본인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「관세법」 제118조의2 내지 5에 따른 납세자보호(담당)관이 처리함에 동의합니다.

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합니다,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

고충민원
처리기간

※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※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다릅니다.

【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기간】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

【납세자보호제도 고충민원 처리기간】 접수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이내

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.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.

20 . . . 고충신청인 서명 또는 (인)

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연락처

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, 아래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전화번호	이메일
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	032) 722-4023	incheonairadv@korea.kr
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	02) 510-1063	seouladv@korea.kr
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	051) 620-6054	busanadv@korea.kr
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	032) 452-3148	incheonadv@korea.kr
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	052) 230-5117	daeguadv@korea.kr
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	062) 975-8034	gwangjuadv@korea.kr